◉태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3-25호

「국유재산법」 위반(내용)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등기 반송 등으로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태안해양경찰서장

변상금 부과고지서

※ 별첨 납입고지서 및 기타 문의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041-950-211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	생년월일 41.09.	
대상자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길10	전화번호 010-	

연간변상금	산출		변상금	료) 산출	점류 연간 사용료(대부료					
	비고	변상금 예상액 (원)	부과기간	연간사용료	사용요율	재산가액	면적 (㎡)또는 사용수익 유형	재산의 표시		
22.00	152일	20,346	18.08.02. -12.31.	16,955	20/1,000	2,035,800	58	797	전	태안군 근흥 면 두야리 339-5
22,88	152일	2,539	18.08.02. -12.31.	2,116	20/1,000	254, 100	7	8,278	EH	두야리 339-8
57.70	365일	51,364	19.01.01. -12.31.	42,804	20/1,000	2,140,200	58	797	전	태안군 근 흥면 두야리 339-5
57,76	365일	6,400	19.01.01. -12.31.	5,334	20/1,000	266,700	7	8,278	EH	두야리 339-8
50.00	365일	52,478	20.01.01. ~12.31.	43,732	20/1,000	2,186,600	58	797	전	태안군 근흥 면 두야리 339-5
59,03	365일	6,552	20.01.01. ~12.31.	5,460	20/1,000	273,000	7	8,278	EH.	두야리 339-8
3,19	18일	2,841	21.01.01. -01.18.	2,368	20/1,000	2,401,200	58	797	전	태안군 근흥 면 두야리 339-5
3,19	18일	352	21.01.01. -01.18.	294	20/1,000	298,900	7	8,278	EH	두야리 339-8
20.90	347일	27,392	21.01.19. -12.31.	22,827	10/1,000	2,401,200	58	797	전	태안군 근흥 면 두야리 339-5
30,800	347일	3,409	21.01.19.		10/1,000	298,900	7	8,278	CH	두야리 339-8
25.04	365일	31,876	22.01.01. -12.31.	26,564	10/1,000	2,656,400	58	797	전	태안군 근 흥면 두야리 339-5
35,84	365일	3,973	22.01.01. ~12.31.	3,311		331,100	7	8,278	ЕĦ	두야리 339-8
5.00	54일	4,468	23.01.01. -02.23.	3,724	10/1,000	2,517,200	58	797	전	태안군 근흥 면 두야리 339-5
5,02	54일	556	23.01.01. -02.23.	464	10/1,000	314,300	7	8,278	EH	두야리 339-8
214,52					EM	충				

귀하가 위 국유재산을 사용하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않고사용・수익함에따라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변상금을부파 하오니2023. 12. 1.까지납부해주시기바랍니다. 만약,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파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바랍니다.

위 변상금 부과고지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 주: 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5조제1항제6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파대상란에 접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유형을 적습니다.
 - 재산이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명세를 적습니다.
- 붙임 1. 변상금 산출 내역 1부.
 - 2. 변상금 납입고지서 1부.(별송) 끝.

변상금 산출 내역

							¬ı ı					
부과넌도	부과일수	태안군 근흥면 두이리 339-5번지					태안군 근흥면 두이리 339-8번지					
		개벨공시지가	재산가액 (점유면적 : 58㎡)	사용료: 주거용 (20/1,000)	× 2021.1.19.부터 적용		건발구시11년	재산가액 (점유면적 : 7㎡)	사용료: 주거용 (20/1,000)	사용료: 수급자 주거용 ※ 2021.1.19.부터 적용 (10/1,000)	변상금 (120/100)	연도별 변상금 (윤수절사)
			58		MERVINI	7	0.02	0.01	1.20			
2018.08.02.~ 2018.12.31.	152	35,100	2,035,800	16,955		20,346	36,300	254,100	2,116		2,539	22,88
2019	365	36,900	2,140,200	42,804		51,364	38,100	266,700	5,334		6,400	57,7
2020	365	37,700	2,186,600	43,732		52,478	39.000	273,000	5,460		6.552	59,0
2021.01.01~	18	41,400	2,401,200	2,36B		2,841	42,700	296,900	294		352	3.1
2021.01.19~ 2021.12.31.	347	41,400	2,401,200		22,827	27,392	42,700	298.900		2,841	3,409	30,8
2022	365	45,800	2,656,400		26,564	31,876	47,300	331,100		3,311	3.973	35.8
2023.01.01.~ 2023.02.23.	54	43,400	2,517,200		3,724	4,468	44,900	314,300		464	556	5,02
2023.02.24.~ 2023.08.01.	159	강제집행으로 인한 건물철거 이후로 벤상급 미 발생										
5년 합계액	1,825											214,52

[※] 부과 고지일(송달일 기준) 2023.8.1. 로부터 5년 소급

^{※ 2023.6.18.}까지 철거된 건축물에 주소지 등록 유지

[※] 건축물 강제집행 이전 및 이후 변상금 부과 대상자 연락 시 거주지 유동적이므로 7월 말 이사 후 송달 요청